



유의사항

1. 이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여권명의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3.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1회만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문서입니다.
4.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유효기간 5년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의 사증면수는 24면입니다.
6.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잘못 인식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등록기준지 기재 대상: 여권을 직접 신청하려는 미성년자,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여권을 신청하려는 사람,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직접 신청이 곤란한 사람을 대신하여 여권을 신청하려는 사람, 해외출생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 긴급여권을 신청하려는 사람,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신원확인을 위해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반드시 신청서 앞쪽의 등록기준지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8.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여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병적증명서, 국외여행허가서(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로서 현역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 등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1. 여권 발급(재발급) 신청 당일 18:00까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당일 접수된 여권 발급(재발급) 신청은 무효화되고 여권 발급 절차가 자동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국내에서는 보통 7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13.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어 직권 폐기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14. 여권은 해외에서 인정되는 유일한 국적 신분증이므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이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5.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6. 사증(VISA)이 필요한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사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문성명 기재방법

1. 여권의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본인이 직접 기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하는 경우 모두 여권법령 등에 따라 변경이 제한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미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 중인 가족(예: 아버지)의 영문 성(姓)과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4.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여권의 영문성명[배우자 성(姓) 표기 및 영문이름 띄어쓰기 포함]과 동일하게 표기됩니다.

처리절차

